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10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 의 자 : 박홍근 · 서영석 · 최혁진
조계원 · 이기현 · 한준호
김영호 · 김병주 · 김준혁
한창민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지능지수가 높지 않아 학습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로 불리우고 있음.

느린학습자는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으나 학습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인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느린학습자에게 초·중·고 학업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느린학습자의 학업 단계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느린학습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아니면서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마다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라. 학교의 장에게 느린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느린학습자의 맞춤형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느린학습자의 학업 단계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과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2. “맞춤형교육”이란 느린학습자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5년마다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7. 느린학습자의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느린학습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맞춤형교육 지원) ① 학교의 장은 느린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맞춤형교육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맞춤형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맞춤형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느린학습자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느린학습자 상담 및 진단·평가 지원
2.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조기 발견 및 실태조사 지원
3. 느린학습자 교육 관련 연구·분석
4.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
5. 교원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느린학습자의 교육 여건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교육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